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33
----------	-------

발의연월일 : 2017. 11. 7.

발의자 : 신창현 · 이용득 · 문희상

송옥주 · 서형수 · 김영호

김한정 · 이원욱 · 한정애

강병원 · 홍영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이옥신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짐.

환경부는 이러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통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있으나, 사용중지가 아닌 개선명령이 내려진 탓에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이 이행하는 동안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3조의2제1호 신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벌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킬 때까지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 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생 략) <u><신 설></u>	제33조의2(별 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운영을 중지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 제)	법률 제13886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2(별 칙) ----- ----- ----- -----. 1. 제14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 설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